

**코로나19 관련,
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(19차)**

2023. 11. 30.



**보건복지부
요양보험제도과**

h·well

국민건강보험



I

목적 및 기본원칙

□ 목적

- 코로나-19 장기화 및 감염취약시설인 입소시설에 대한 한시적 방역 강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시 참고할 수 있도록 「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(19차)」 안내

□ 기본원칙

- 동 지침은 코로나-19 집단감염 확산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

연번	특례별 구분	주요 내용	적용월	비고
1	종사자 '월 기준근무 시간' 인정 특례	• (확진자) 검사일(검체채취일)로부터 5일 이내, 1일 최대 8시간 근무인정	별도 공지시 까지	연장
2	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	• (업무배제자) 최대 15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	별도 공지시 까지	연장
3	주야간보호 '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산정 기준'	• (대상) 수급자가 확진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함 • (인정기준)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일정이(15일 이상) 적기 통보된 일자(월~금요일, 공휴일 제외), 해당 월 최소 1일 실제 이용 수급자 • (인정비용) 격리권고 기간 내에 미이용시 등급별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% 지급 ※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	별도 공지시 까지	연장
4	방문요양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	• (기준) 방문상담(1회)을 원칙으로 하되, - 사회복지사 또는 수급자가 확진된 경우 유선 상담(월 2회) 대체 ※ 수급자 상담거부는 대체 인정 사유에서 제외	별도 공지시 까지	연장
5	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	• 확진 수급자 외박 시 1회 최대 15일 외박비용(50%) 인정 • 신규 입소기준 완화(검사 횟수 및 격리기간 단축)에 따른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추가산정(최대 2일) - (내용) 입소자(접종여부 불문)가 신규 입소하여 격리기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추가 급여비용 지급 - (기준) 격리실에서 신규 입소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 경우 '수급자 격리 급여비용' 추가 산정(입소시 PCR 검사 1회 및 음성 확인시까지 격리,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 없이 입소) - (수급자 격리 급여비용) 격리기간 동안 수급자 1인당 40,870원 추가산정(2023년) - (급여비용 추가 산정)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수준의 금액	별도 공지시 까지	연장

6	종사자 검체채취 (PCR검사) 지원금 지급	• (대상) 입소형 시설(주야간, 단기보호 기관 포함) • (내용)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지급 • (기준) 시설 내 의료·간호인력이 종사자 전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지원금액 산정	별도 공지시 까지	연장
7	코로나19 진단검사 '월기준근무시간' 인정 특례	• (대상) 입소형 시설(주야간, 단기보호 포함)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 • (내용) 근무시간에 진단검사에 참여한 경우 1일 8시간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(코로나 검사코드)	별도 공지시 까지	연장
8	한시적 방역지원금	• (대상) 입소형 시설(주야간, 단기보호 포함) • (내용)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1인당 월 1,200원 지급	'23.12.~ '24.11.	신설

Ⅱ

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

1. 시설급여 등 종사자 ‘월 기준근무시간’ 인정 특례

- (대상) 입소형 시설(주야간·단기보호 기관 포함)에 소속된 전체 종사자 및 재가기관의 시설장,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‘월 기준근무시간’을 적용받는 종사자
- (내용) 종사자가 확진되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‘유급병가’ 처리된 경우, 검사일(검체채취일)로부터 최대 5일 이내(1일 최대 8시간) 근무시간 인정
- (증빙서류) 확진 통지서 등 검사일 및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반드시 5년간 보관)
- (적용월) 별도 공지시까지 (급여제공월 기준)
- (청구)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‘병가일수’와 별도 산정 가능하므로, ‘예외인정코드’ 등록

2.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

□ 시설 내 감염된 수급자 또는 종사자의 감염 발생으로 시설이 폐쇄되어 시설 내 함께 격리된 경우

○ (업무배제자) 1일 8시간,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

⇒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‘병가일수’와 별도산정 가능
(‘코호트 격리’ 코드)

※ 이 경우 코호트 격리를 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·반드시 5년간 보관

○ (적용 월) 별도 공지시까지 (급여제공월 기준)

□ 코호트 격리를 한 해당 월에 한하여 급여비용 감액산정이 되더라도 고시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

※ 이 경우 고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적용하지 않음. (다만, 야간직원 배치 가산, 간호사 배치가산은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)

○ (적용 월) 별도 공지시까지 (급여제공월 기준)

3. 주·야간보호 ‘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’

□ 수급자 확진으로 주·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미이용일에 대한 특례비용 인정

○ 적용기준

- (적용 월) 별도 공지시까지 (급여제공월 기준)

- (대상) 확진(양성) 통지를 받은 수급자

※ 확진 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5년간 보관

- (인정기준)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일정(월 15일 이상)이 적기 통보된 일자(월~금요일, 공휴일 제외), 해당 월 최소 1일 이상 실제 급여 이용 수급자의 미이용 일자만 적용

※ 반드시 전월 말 기준 적기통보 내역(일정등록 포함)에 대해서만 산정 가능하며, 당월 수정(추가) 통보 건은 산정 불가

- (인정비용) 등급별 해당하는 일자에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% 지급

※ 고시 제31조의 ‘라-3’의 60%(치매전담실은 제74조의 ‘8시간 이상~10시간 미만’의 60%)를 최대 한도로 하며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

- (인정일수) 확진(양성) 통지를 받은 수급자의 격리 권고기간* (기간 중 토·일·공휴일 제외)

※ 감염취약시설 입소자(이용자)는 검사일(검체채취일)로부터 7일간 격리 권고

- (적용월) 별도 공지시까지 (급여제공월 기준)

○ (본인부담금) 수급자 비용 추가 부담 불가 ... 기존 고시상 ‘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’은 현행대로 수납

○ (월한도액) 미포함 ... 기존 고시상 ‘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’은 현행대로 포함

※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해당 월 ‘실제 이용한 급여비용’과 ‘미이용일 산정비용(기존 고시상 ‘미이용일 급여비용’ 및 ‘코로나 특례비용’)의 합산한 금액이 해당 월 월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

○ (급여비용 가감산 기준) ‘코로나 특례비용’에 한하여 급여비용 가감산 산정기준에서는 ① 입소자수, ② 월 가산 기준금액, ③ 급여 제공일수(해당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가 전혀 없는 경우만) 제외함

※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가감산 산정 시 ① 입소자수, ② 월 가산 기준금액, ③ 급여 제공일수에 포함됨

① ‘코로나 특례비용’을 산정하는 수급자는 고시 제47조제2항제1호의 해당 일자의 ‘입소자 수’에서 제외

② ‘코로나 특례비용’은 고시 제56조제1항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, 간호사 배치 가산,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가산 금액 산정 시 ‘월 가산 기준금액’에서 제외

③ 해당 일에 부득이하게 ‘코로나 특례비용’을 산정하는 수급자만 있을 경우 입소자 수 계산 시 필요한 ‘급여제공일수’에서 제외

※ ‘코로나 특례비용’을 산정하는 수급자 외 실제 이용자가 있는 경우는 급여제공일에 포함됨

④ 해당 일에 수급자 전원이 고시 제32조제3항에 따른 미이용일 급여비용 (5일) 또는 한시적 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 만을 청구하는 날은 월 기준 근무시간 계산 시 필요한 ‘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’하되, 해당 일 근무한 종사자의 근무시간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

○ (청구기간) ‘코로나 특례비용’은 급여제공월 기준 3개월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청구 가능 … 청구 전산화면이 한시적 운영되므로 반드시 적기청구 요함

※ 기존 고시상 ‘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’은 현행대로 청구 가능

4.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

-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방문상담(월 1회)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하게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상황*이 입증되는 경우 상담불가 사유별 대체 인정하는 유선상담 횟수 기준을 충족 시 인정

※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확진시에만 해당되며, 수급자 상담거부 사유는 해당되지 않음

< '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상담 불가 사유별 대체 인정 유선상담 횟수' >

◆ 사회복지사 또는 수급자 확진시

⇒ 방문상담(월 1회)을 유선상담(월 2회)으로 대체 인정

* 급여제공 중(급여제공시간) 월 2회 유선상담(수급자, 종사자)하고, 유선상담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 되도록 노력 ... 기존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'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'에 기재(월 2회), 프로그램 관리자 준용하여 운영(제공 시간 중 월 2회 유선 상담)

- 1인만 종사하고 있는 해당기관의 사회복지사(프로그램관리자)가 확진된 경우 및 병설하는 입소시설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입소시설의 코호트 격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, 시설장(사회복지사)이 급여제공 시간 중 유선상담(월 2회)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하여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

※ 확진 통지서, 코호트 격리 대상 종사자 명단이 포함된 코호트 격리기간(시작일 및 종료일)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 증빙 자료 5년간 보관 필요

- (적용 월) 별도 공지시까지 (급여제공월 기준)

◆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와 사실관계를 기록, 보관하고 유선으로 확인한 수급자 안부,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상담 내용을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에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

5. 사례별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

□ 시설급여기관 신규 입소 기준 강화

- (내용) 입소자(접종 여부 불문)가 신규 입소하여 격리 기간에 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추가 급여비용 지급
- (관련근거) “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”
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6912호, 2022.6.17.)

나 신규 입소자 선제검사: 입소시 2회 PCR, 4일격리 → 입소시 1회 PCR 음성확인시까지 격리
※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

- (대상)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소자
- (기준)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수급자 입소 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하고, 음성 확인시까지 격리를 한 경우 최대 2일 ‘수급자 격리 급여비용’ 추가 산정

- (수급자 격리 급여비용) 신규 입소자의 경우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일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격리기간 동안 ‘수급자 격리 급여비용’* 추가산정

* 급여제공월 기준 노인요양시설 1등급 1일당 수가(2.3:1)의 50%/일(원 단위 절사)
(2023년 : 노인요양시설 1등급 1일당 81,750원의 50% 수준인 40,870원/일)

※ ‘수급자 격리 급여비용’ 추가산정은 고시 제38조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격리 기간 시작과 종료 당일 격리하여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 ‘수급자 격리 급여비용’의 100%를 산정, 12시간 미만인 경우 50% 산정

- (비용부담 원칙) ‘수급자 격리 급여비용’의 100%를 수급자가 부담 (수급자 부담에 대한 감경이 적용되지 않음)

- (급여비용 추가 산정) 신규 입소자를 격리 수용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이상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‘수급자 격리 급여비용’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추가 산정하여 공단에서 시설에 지급 (수급자 미부담)

* 급여제공월 기준 노인요양시설 1등급 1일당 수가(2.3:1)의 50%/일(원 단위 절상)
(2023년 : 노인요양시설 1등급 1일당 81,750원의 50% 수준인 40,880원/일)

- (급여비용 가감산 기준)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과 급여비용 추가산정에 따른 금액은 월 가산 기준금액에서 제외함

< 3등급 노인요양시설 입소한 경우 1일당 수급자 부담 예시 >

구분	본인부담금('23년 1월 기준)		총 본인부담금
	3등급 급여비용(71,620원)	수급자 격리비용	
일반 수급자	20% = 14,320원	40,870원	55,190원
40% 감경 수급자	12% = 8,590원		49,460원
기초 수급자	0% = 0		40,870원

- (청구기간) 급여제공월 기준 3개월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청구 가능
- (작성서류) 급여제공기록지에 격리 기간(일시) 표기, 해당 기간 침실(생활실)별 입소자 이용현황, 검사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증빙자료(검사일자가 확인되는 검사결과 통지서, 검사관리(의뢰)대장[붙임] 등) 등 반드시 5년간 보관
- (적용 월) 별도 공지시까지 (급여제공월 기준)

☐ 확진된 수급자가 시설 외 장소로 격리 이송된 경우

- (격리기간 10일 이내) 격리기간만큼 외박비용 인정
- (격리기간 10일 초과) 연속하여 최대 15일 외박비용 인정
 - ※ 수급자의 확진 관련 진단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입증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5년간 보관
- (적용 월) 별도 공지시까지 (급여제공월 기준)

6. 종사자 검체 채취 지원금 (PCR 검사시)

- (대상) 입소형 시설(주야간·단기보호 기관 포함)
- (내용)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지급
 - ※ 해당 지원금은 시설 내에서 검체를 채취하거나 검체 채취 과정을 직접 보조한 종사자에게 지급
- (기준) 최대 월 4회(주 1회 ~ 2주 1회) 시설 내 의료·간호인력이 종사자 전원*에 대해 ‘PCR 검체 채취 시’ 지원금액 산정

*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, 일부 인원이 보건소 등 별도 방식(보건소 인력이 시설 내 방문 또는 시설 외 검사)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를 고려, 종사자 현원의 70% 이상을 시설 내 의료·간호인력이 검사를 한 경우 인정

▶ (종사자 현원 기준)

- ① 휴직, 자가격리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과 사회복지요원 등 종사자가 아닌자는 제외, ② 검사 실시기간 중 하루라도 근무한 종사자는 모두 포함

- (검사주기) 주 1회 ~ 2주 1회(주 1회 초과 불가)* 원칙

* 주 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

- (지급금액) 월 검체 채취 횟수에 따라 시설 규모별(해당 월 현원 기준) 월 기준 지원금의 25%, 50%, 75%, 100% 산정

< 시설 규모별 지원금 산정 기준 >

입소자(이용자) 규모	10인 이하	30인 이하	50인 이하	50인 초과
월 기준 지원 금액	10만원	30만원	50만원	70만원

< 검체 채취 횟수에 따른 지급 금액 >

검사횟수(월 기준)	1회	2회	3회	4회이상
지원 금액	월기준 지원금액 ×25%	월기준 지원금액 ×50%	월기준 지원금액 ×75%	월기준 지원금액 100%
검사인원(종사자 기준)	횟수 당 종사자 현원의 최소 70%이상 검사			

- (적용월) 별도 공지시까지
 - (청구기간) 급여제공월 기준 3개월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청구 가능
 - (작성서류) ‘검사관리(의뢰)대장[붙임], ‘보건소에 검체 채취 의뢰한 내용 등 증빙서류(수령증)’를 반드시 5년간 보관 ... 검사 관리(의뢰)대장은 해당 기관에서 보건소에 보고 및 관리하는 엑셀양식에 검체 채취자, 채취장소 추가
- ※ 월 검체 채취 횟수 산정시 시설 내 의료·간호인력을 활용하여 종사자 현원의 70% 이상 검사를 시행한 경우만 1회로 인정됨

7. 코로나19 진단검사 '월 기준근무시간' 인정 특례

- (대상) 입소형 시설(주야간·단기보호 기관)에 소속된 요양보호사, 간호인력 등 전체 종사자, 병설 재가기관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
- (내용) 근무시간에 병·의원을 방문하여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은 종사자에 대하여, 1일 8시간 범위 내 검사를 위해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
 - (간호인력 등) 검체를 보건소로 직접 운송하는데 소요된 시간 포함
- (전산등록)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병가일수와 별도산정하며, '코로나 검사코드'로 등록
- (작성서류) 검사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증빙자료 (검사일자가 확인되는 검사결과 통지서, 검사관리(의뢰)대장[붙임] 등) 반드시 5년간 보관
- (적용월) 별도 공지시까지

8. 한시적 방역지원금

- (대상) 입소형 시설(주야간·단기보호 기관 포함)
- (내용)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, 자가진단 키트, 소독제 구매 등 방역 활동 비용 발생에 대한 지원
- (기준)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
 - ※ 해당 월 병설기관으로 이동한 경우 급여제공일이 빠른 1개소만 지급, 미이용 또는 외박비용만 청구할 경우 제외
- (지급금액) 수급자 1인당 1,200원/월
- (적용기간) '23.12.1. ~ '24.11.30.
- (청구기간) 급여제공월 기준 3개월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청구 가능
- (작성서류) 해당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명단(총 명수, 입소일, 외박일 등 급여제공여부 명시)을 반드시 5년간 보관

[접수대장 예시]

기관명 : _____ 요양기관번호 : _____

검사관리(의뢰)대장

기관 담당자 연락처

순 번	시 도	시 군 구	기관 구분	검체 번호	검체 채취 일	성 명	생년 월일	성 별	체온	증상 유무	증상 내용	검사 결과	기 타	채 취 자	채취 장소
1			요양 시설	시설명 -연번	2021- 1-15				37.3	1	발열 두통	양성			사무 실
2			요양 시설	시설명 -연번	2021- 1-15					0		미결 정			간호 사실
3												음성			

※ 「코로나-19 요양·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 안내」 매뉴얼 참조

- (기관구분) 요양시설
- (검체번호) 시설명-연번을 작성
- (검체채취일) 실제 검체 채취가 실시된 날짜 기입
- (체온) 검사시 실측한 체온 기입
- (증상) 검사시 증상유무 확인 및 증상내용 작성
 - 증상이 있는 경우 '1' 입력, 없는 경우 '0' 표기
 - 증상내용은 기침, 가래, 인후통, 호흡곤란, 근육통, 두통, 오한, 미각 소실, 후각소실 등 입력
- (검사결과) 비인두도말 PCR 검사 결과 기입
- (기타) 피검사자 관련 조치사항 등 기록